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4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55415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원 고	1. A
	2. B
피 고	○○○○시 ○○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3. 10. 11.
판 결 선 고	2023. 11. 22.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1997. 12.경 자동차 지방세 채무금 1,074,300원, 1998. 8.경 같은 1,074,300원, 1998. 12.경 같은 1,074,300원, 1999. 6.경 같은 638,780원, 1999. 12.경 같은 638,780원, 2000. 6.경 같은 638,780원, 2000. 12.경 같은 638,780원, 2001. 6.경 같은 638,780원, 2001. 12.경 같은 319,380원, 2002. 6.경 같은 319,380원, 2002.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4

12.경 같은 319,380원, 2003. 6.경 같은 319,380원, 2000. 8.경[1] 주민세 6,000원을 포함한 합계 7,700,320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88. 6. 22.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1997. 12.경 1,074,300원, 1998. 8.경 1,074,300원, 1998. 12.경 1,074,300원, 1999. 6.경 638,780원, 1999. 12.경 638,780원, 2000. 6.경 638,780원, 2000. 12.경 638,780원, 2001. 6.경 638,780원, 2001. 12.경 319,380원, 2002. 6.경 319,380원, 2002. 12.경 319,380원, 2003. 6.경 319,380원의 자동차세를 각 부과하였고, 2000. 8.경에는 주민세 6,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구청장은 1998. 6. 2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나항과 같이 1997년 12월경 부과한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압류등록을 마쳤고 2016. 3. 31.경 이 사건 자동차의 멸실이 인정되어 그 무렵 위 압류등록이 해제되었다.

라. 원고 A은 2021. 11. 22. 이 사건 각 처분 중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원고 A의 소는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2. 4. 13. 선고 2021구단

1) 피고의 2023. 11. 20.자 참고자료에 따라 주민세 부과처분일을 이와 같이 특정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4

25939 판결), 원고 A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2. 10. 5. 선고 2022누42572 판결) 2022. 10.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채무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지방세 과세처분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항고소송이 아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취지는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채무는 발생한지 약 25년 이상 경과함으로써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종류 중 하나인 무효등 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제2항)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4

가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만,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목, 제53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볼 때, 구가 특별시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하는 것은 특별시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신고·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귀속주체는 특별시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피고로 삼은 ○○○○시 ○○구는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징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일 뿐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 B의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지방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원고 B이 원고 A의 배우자라거나 이 사건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A의 지방세 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B의 소는 이러한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가정적 판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4

다만 이하에서는 원고 A이 피고적격이 있는 ○○○○시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가정하여 원고 A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 A은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원고 A의 조세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관련 행정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자동차세 및 주민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1998. 6. 2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압류등록을 마쳤고 2016. 3. 31.경 이 사건 자동차의 멸실이 인정되어 그 무렵 위 압류등록이 해제되었으나, ○○구청장은 원고 A이 2020. 8. 10. 취득하여 신규 등록한 모닝 차량에 대하여 2021. 2. 18.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부과한 자동차세 체납액 등 지방세 체납액 합계 7,745,32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등록을 마쳤다.

그렇다면 2016. 3. 31.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말소로 인하여 그에 관한 압류가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1. 2. 18. 다시 위 모닝 차량에 관하여 압류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관련 자동차세, 주민세 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위 모닝 차량에 대한 압류일인 2021. 2. 18.에 다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원고 A의 ○○○○시에 대한 자동차세, 주민세 조세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원고 A은 소장과 준비서면에 '이 사건 각 처분 세액 합계 7,700,320원의 적법한 우편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고도 언급하고 있어서, 그 주장을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우편 송달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더라도,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의 판단내용과 같이 ① ○○구청장이 원고 A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4

점, ② 그 무렵 ○○구청장이 발송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도중에 유실되었다거나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오히려 ○○구청장은 1998. 6. 25. 원고 A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1997. 12.경 부과된 자동차세를 미납하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압류등록을 마쳤고, 그 무렵 원고 A은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A은 관련 행정소송 제1심에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 A에게 모두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 A의 주장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판단하여 보더라도, 이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4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세무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지방세 : 특별시·광역시·도세 또는 시·군·구세를 말한다.

② 이 법중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은 각각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공무원과 광역시공무원"으로, "시·군", "시·군세", "시장·군수" 또는 "시·군공무원"은 각각 "구", "구세", "구청장" 또는 "구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주민세
7. 자동차세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라. 주민세

마. 자동차세

③ 구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5>

1. 보통세

가. 면허세

나. 재산세

제53조 (도세징수의 위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4

① 시, 군은 그 시, 군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 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에 따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비로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영중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특별시와 광역시외의 시의 구를 포함한다)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시장·군수"는 "구청장"으로 본다.

제41조(징수교부율 및 교부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군 및 자치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시·군 및 자치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군 및 자치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은 각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도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수건수를 반영할 경우 레저세의 징수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끝>